충청북도 가격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7. 13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7월 10일

○ 회부일자 : 1995년 7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1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95. 7. 1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격등의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도지사로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함 (안 제3조)

(1) 가격등의 표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2) 가격등의 표시와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

(3) 가격등의 표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 위반 유형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별표)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 이의 신청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노 재 청)

충청북도 가격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격등의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도지사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격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있어서는

- 가격등의 표시명령을 위반한 사람
- 가격등의 표시와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

· 가격등의 표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으로 했으며

둘째,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는

· 위반유형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셋째, 과태료의 부과 및 청문에 있어서는

· 과태료 납부기한을 처분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넷째, 이의 신청에 있어서는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상거래 질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문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 : 7명, 찬성 : 7명)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가격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